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 1)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08)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 2)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3)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 1) 현행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자동 편입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대상 편입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
- 2)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무제표 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
- 2)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거래금액 판단 시점을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혈족 5촌·6촌 또는 인척 4촌(이하 “기타 친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경우(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회사를 해당 기타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타 친족과 함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요청을 하거나 제외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를 “3”으로, “갖춘”을 “갖춘 회사 및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요건에 해당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외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하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제4조의 요건에 해당된 날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통령령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59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 ----- ----- -----.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1. ----- ----- ----- -----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다. (생략)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혈족 5촌·6촌 또는 인
척 4촌(이하 “기타 친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채무보증 또
는 자금대차가 있는
경우(동일인 또는 동
일인관련자와 채무보
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회사를 해당 기
타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타 친족
과 함께 지배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마. (생략) 2. (생략)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 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u>요건(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요청을 하거나 제외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u>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 마. (생략)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1)·2) (생략)

4. ~ 6.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
-

1)·2)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생략)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후단 신설>

가. ~ 라. (생략)

③ ~ ⑦ (생략)

대통령령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 4. (현행과 같음)

5. _____

_____ 3 _____

----- 갖춘 회사 및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
는 ---. 이 경우 제4조의 요건
에 해당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외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하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제4조의 요건에
해당된 날의 직전 일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58> (생략)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58> (현행과 같음) <59> ----- ----- -----.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 ----- ----- ----- ----- ----- ----- -----.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u>제15조제211호</u> ”로 한다.	----- ----- ----- ----- <u>제2조제11호</u> ”-----.
(이하 생략) <60> ~ <68>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60> ~ <6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843